

사랑침례교회 경조사 운영 규정(2023.1.1. 개정안)

I. 목적

- 성도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교제를 통해 참된 신약 교회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함
- 성도들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며 구체적인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
- 성도들의 불필요한 부담(비용 및 시간)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

II. 경조사 참석 대상: 애경사가 발생한 시점에서 교회를 신실하게 출석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성도

- 사망
 - 본인
 - 배우자
 - 직계존비속의 부모와 자녀: (*) 형제나 자매가 혼자 나오는 경우 형제의 장인/장모, 자매의 시부모는 제외
- 결혼
 - 본인과 본 교회 출석하는 성도의 자녀: (*) V조 시행 규칙 개정 참조
- 병문안
 - 본인: (*) 3일 이상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만
- 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애경사 위원장과 집사회의 협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음

III. 경조사 참석 방법

- 위에 해당하는 분들의 경조사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 인도자는 애경사 위원장에게 전화나 문자로 신속히 통보한다.
- 애경사 위원장과 경조사 팀에서 교회 차원의 참석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활동한다.
- 참석 대상인 경우
 - 교회 홈페이지와 예배 시간 광고 때에 전교인 대상으로 광고한다.
 - 홈페이지에 애경사 위원장 명의로 광고를 올린다.
 - 결혼식 축의금, 장례 조의금, 병문안 위로금으로 교회에서 20만원을 지출한다.
 - 장례식 참석의 경우 별도로 조화를 보낼 수 있다.
 - 애경사 위원장, 집사, 지역 인도자 중 1분이 교회 대표로 참석한다.
 - 먼 지방에서 애경사가 발생하여 몇 분들이 교회 대표로 참석할 경우 대중교통(열차, 버스 등)을 이용하면 6명까지 경비를 지원하고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유비/통행료/식비 등을 지원한다.
- 참석 대상이 아닌 경우
 - 교회 홈페이지와 예배 시간 광고 때에 전교인을 대상으로 광고하지 않으며 교회에서 축의금, 조의금, 위로금 등을 지출하지 않는다.
 - 지역 모임이나 교제 관계에 있는 모임, 개인적인 지인들을 대상으로 그런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경조사 내용을 알리는 것은 무방하며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.
-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것은 애경사 위원장과 집사회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시행한다.

IV. 시행일: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V. 시행 규칙 개정(2021년 9월 1일): 결혼의 경우 예비 부부가 부모와 함께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면 당일에 인사를시키고 결혼에 대한 안내 광고를 하며 2, 3층 계시판에 청첩장을 부착하여 성도들이 볼 수 있게 한다.

“형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…
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퍼 올라.”(롬12:10, 15)